

우유용종이팩 예치금 부과 비현실적

최인철 / 한국유기공협회 기획조사부장

1. 서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의 예치) 제1항 및 동시행령(안) 제22조(폐기물 회수·처리 비용의 예치대상 제품·용기)의 규정에 의거 우유용 종이팩에 대한 예치금을 유가공업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부담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규정에 의거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예치금 요율을 현재보다 대폭(100%) 인상하여 부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공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예치금액도 현재의 11억2천만원 보다 100% 인상된 22억4천만원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표 참조).

2. 유가공업체 입장

1991년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예치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 질 때 우유용 종이팩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이나 금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치금 요율을 대폭 인상 조정코자 하는데는 유가공업체로써는 적극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유용 종이팩을 예치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유는 농민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단순 살균처리하여 만든 제품으로써 정부당국에서도 국민 식생활 개선과 제2세 국민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과소비 대상이 아니다. 또한

포장지(종이팩)도 공해 유발능력이 적고 소각시도 완전히 소각되는 등 오염의 기여도가 낮은 제품이다.

둘째, 우유는 전국 방방곡곡의 가정, 직장, 학교, 군, 대형슈퍼, 소매점 등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유통과정도 대리점, 판매원, 점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어 폐우유팩을 체계적으로 회수·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미국 일본 독일 등 예치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우유용 종이팩은 전체 종이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고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폐기물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치금이 현재보다 대폭 인상될 경우 우유 생산업체에 원가 압박을 가중시켜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나라 낙농 및 유가공산업 발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유는 신경제 계획에서 20개 특별 가격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가격을 동결하고 있어 예치금이 대폭 인상될 시는 동 인상액을 원가에 반영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유업체 경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유용 종이팩은 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이며 만부득이 품목제외가 불가능할 시는 현행 요율대로 거치시켜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유가공업체가 우유용 종이팩으로 부담하는 예치금액

구분(규격)	우유팩 생산량	예 치 금 액	
		현 행	변 경
250㎖이하	3,016백만개	603.2백만원	1,206.4백만원
250㎖초과	1,294백만개	517.6백만원	1,035.2백만원
계	4,310백만개	1,120.8백만원	2,241.6백만원